

'90年度 歳入 歳出 決算 審査 結果報告書

1991. 12. 26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시 1991년 11월 30일

나. 회부일자 1991년 12월 4일

다. 상정일자 1991년 12월 18일

2. 결산개요

본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 회
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 사항을 검토한 바

가. 세입면에서는

○ 세입 예산액 33,529,381천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36,056,670천원으로 107.5%의 양호한
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1,329,291천원, 담배소비세 482,210천원,
징수교부금 737,151천원이 초과 징수액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 세입 재원의 정확
한 판단에 의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됨.

○ 양주군은 재정자립도가 58.1%로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지방화시대를 맞는 지역 주민
의 숙원사업과 복지사업을 수렴하고 수도권 환경에 부응해야 할 다변화 지역으로서
능동적 대처를 위해 신규 세수입원의 발굴과 세수입 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
과제라고 사료됨.

나. 세출면에서는

- 세출액은 25,886,715천원으로 지역개발비가 40.1%의 절유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 내용은 도로치수 사업임.

익년도 이월금은 10,169,955천원으로 명시이월비 2,423,548천원, 사고이월비 2,854,409천원, 보조금 집행 잔액 244,817천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,647,181천원으로 구성되었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기 보고 내용으로 갈음

4. 주요 지적사항

- 양주군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과 같음.

5. 심사결과

-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없음